

교직원 표창 규정

개정 2019.04.17. 개정 2019.09.16. 개정 2025.06.23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표창의 공정과 표창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표창의 대상)

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국가, 혜전학원 또는 본교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.<개정 2019.09.16.>

제3조 (표창의 종류)

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공로상, 근속상, 모범교직원상, 감사장(패), 우수계열(학과)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
제4조 (공로상)

공로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.

- ① 직무를 성실 근면하게 수행하여 실적이 우수한 자
- ②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이며 건설적인 제안을 한 자

제5조 (근속상)

① 근속상은 본교 교직원(정규직)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
1. <삭제 2025.06.23.>
2. 20년 이상 근속자
3. 30년 이상 근속자

② 전항의 기간은 학교법인 혜전학원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(휴직기간 제외)만 인정하고 표창 기준일은 해당년도 개교기념일로 한다.<개정 2019.04.17.>

③ 제1항에 각 호의 근속상 수여 대상자라 할지라도 징계 처분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없다.

제6조 (모범교직원상)

모범교직원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.

- 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
- ② 재해,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
- ③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7조 (감사장(패))

감사장(패)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.

- ① 대학발전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학교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
- ② 경제적 기타 연구재료를 기증함으로써 진리탐구에 도움을 준 공적이 현저한 자나 단체
- ③ 대학발전에 도움을 준 졸업생(동문)<신설 2019.04.17.>

제8조 (우수 계열(학과) 표창)

계열(학과)운영이 현저히 우수하여 대외적으로 학교를 명예롭게한 계열(학과)

제9조 (표창방법 및 부상)

표창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시행하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<개정 2019.09.16.>

제10조 (표창시기)

표창은 다음 시기에 행한다.

- ① 정기표창은 개교기념일
- ② 수시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11조 (표창자 선정) <전문개정 2016.03.31.>

- ① 추천서에 의하여 총장이 승인한다.<개정 2019.04.17.>
- ② <삭제>
- ③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제5조 제1항의 각호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 본교 개교기념일로부터 계산한다.

제3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03.3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9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06.23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